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고 법원행정처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27. ~ 3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87호 중 “불공정거래”를 “불공정거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29. 영 별표 제 129호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:

별지 제151호서식

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(이하 “국세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별지 제104호서식의 제목 “불공정거래 조사자료”를 “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”로 한다.

별지 제104호서식 중 “불공정거래”를 “불공정거래 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.

법인등기에 관한 자료

법인 등록번호	법인명	본점 소재지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	대표자 주소	회사성립 연월일	등기부상태

297mm×210mm(백상지 80g/㎡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)		제2조(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)		
①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	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~ 86. (생략)		1. ~ 86. (현행과 같음)		
87. 영 별표 제87호에 따른 <u>불공정거래</u> 조사자료: 별지 제104호서식		87. ----- <u>불공정거래</u> 등 ----- -----		
88. ~ 128. (생략)		88. ~ 128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	129. 영 별표 제 129호에 따른 <u>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: 별지 제151호서식</u>		
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		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(이하 “국세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		

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